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1.(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현행과 같음)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	(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5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98. 4.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ㅇ 상이유공자의 등록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범위를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추가 확대함(안 제2조 2항)
- ㅇ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 또는 신축·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7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 조례(안)의 개정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방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어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8

제출년월일 : 1998. 4.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ㅇ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감면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ㅇ 상이유공자의 등록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범위를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추가 확대함(안 제2조2항)
- ㅇ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 또는 신축·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없음.

라.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 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 설>	제17조의2(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